

(시행령)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 완화(안 별표4)

가. 개정 이유

-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환경영향이 낮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, 국내 폐기물 규제를 면제
- 순환자원의 경우 해외에서 유상 수입함에 따라 불법 방치 또는 투기 가능성이 낮은 한편, 유가자원임에 따라 환가성도 우수
- 이에, 방치 및 투기 시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수입 보증 의무를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순환자원의 경우 수입보증 보증금 또는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국내 처리단가를 0원으로 적용하여 수입보증 완화(현재는 폐지·고철만 0원 적용)
- ※ '25.10.16.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"폐자원 수출입규제 합리화" 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

다.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수입보증 부담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, 수입 기간 단축 및 보험가입 절차 업무 부담 경감으로, 핵심광물 함유 순환자원 수입 애로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('25.10.16)
-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('25.10.31, 관계부처 합동)

2. 수출입 신고수리 취소 등에 대한 위임 근거 신설(안 제24조)

가. 개정 이유

- 수출입 허가의 경우 허가 및 허가취소 사무가 유역·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되어 있는 반면, 신고의 경우 신고수리 업무는 위임되어 있으나, 신고수리 취소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
- 이에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현장 집행기관인 유역·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개선·정비하고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유역·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이 누락되어 있는 3개* 업무에 대한 위임 규정 신설

* ①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, ②과징금 부과 및 징수, ③허가 및 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청문

다.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현장 집행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위임 공백에 따른 행정 불합리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사항 없음

3. 수출입 관련 서식 오타 수정(안 별지 제4호서식, 제7호서식,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수입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상의 오타 수정, 누락사항 추가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(제4호서식) “단일수출 및 포괄수출” → “단일수입 및 포괄수입”으로 변경
- (제7호서식) 주의사항 중 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” → “과태료”로 변경
- (제7호의2서식) 뒤쪽 작성요령 중 “1의2. ⑧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.” 추가
- (제7호의3서식) 뒤쪽 작성요령 중 “2의2. ⑪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.” 추가

다.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서식상의 오류 수정을 통해 착오 예방 및 현장 혼란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사항 없음